



LPG 품질불량 신고포상금제 도입

한국가스안전공사는 품질불량 LPG의 유통근절을 위해 품질불량 LPG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.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.

● 한국가스안전공사 ●

-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품질불량 LPG의 유통근절 유도
- 품질불량 LPG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50만원 지급

□ '02년부터 특소세 차이를 노린 프로판 불법혼입을 방지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충전소를 대상으로 LPG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가 참여하는 포상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신고대상은 품질불량 LPG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화, FAX, 인터넷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신고센터(TEL 031-312-2341~9)에서 신고를 접수하며, 신고된 LPG가 품질불량으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.

□ 가스안전공사관계자는 "품질위반 LPG충전소가 증가추세에 있어 산업자원부에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추가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불량 LPG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어 품질불량 LPG의 제조·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"고 말했다.